
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검토의견

민변 사법센터 /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

1. 의견서 제출의 배경

○ 정부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정부는 검찰에 의한 수사정보의 자의적인 수집·이용 우려를 차단하기 위하여, 기존 대검찰청의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하는 골자의 개정안을 밝혔다. 이로써 수사정보의 수집·관리·분석 기능과 검증·평가 기능을 분리하여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한다는 취지이다.

○ 검토 요지

-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·수사·기소의 기능은 분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러한 개편안은 일견 환영할 일이다. 그러나 ‘범정’ 이든 ‘수정관’ 이든 그 명칭이 어떻든 간에 대검찰청에서 전체 검찰이 다루는 수사 관련 정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볼 때, 정부 개정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. 수사기관의 수사정보 수집과 활용에 관한 원칙을 세워서, 다시 과거로 회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2. 연혁적 검토

○ 연혁

-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 산하에 있던 범죄정보관리과와 1999년 별도 설치된 범죄정보기획관실(범정)은 문재인정부 들어 조직 축소·폐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.

- 범정은 2018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간판을 바꿔달고 기능이 축소되었고, 2020년 9월에는 차장검사급이 맡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하고 산하 수사정보담당관을 1명으로 줄였다.
-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직 시기 판사 사찰 논란, 고발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고 여전히 권한남용 우려가 있어 폐지론이 다시 대두되었다.

○ 법무·검찰 개혁위원회의 폐지 권고

- 2019. 10. 28. 제2기 법무·검찰 개혁위원회는 ‘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’와 관련하여 권고안을 발표하였고, 그 대강은 다음과 같다.
- **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·수사·기소의 기능은 가능한 한 분산되어야 함**에도 불구하고, 검찰은 광범위한 정보수집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.
- 전신인 범정은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각 분야의 동향을 수집·관리하고 정치적 목적 등에 활용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잠정적으로 업무를 중단한 바 있으나, 2018. 2.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 후 여전히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.
- ‘직접수사 축소’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‘**특정한 목적을 위한 표적적·선택적 정보수집**’이 가능하고 직접수사를 직·간접적으로 지원·지휘하는 대검의 정보수집 부서를 즉시 폐지하여야 한다.
- 이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, 수사정보1·2담당관을 즉시 폐지하고, 이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「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.

3. 비판점

○ 검찰 내부 조직의 명칭만 바뀔 뿐 근본적 변화인가?

- 검찰의 수사권 축소에 맞추어 정보 기능을 축소하고 분산시키는 방향은

맞고 환영할 일이다.

- 이번 개편안으로 대검찰청의 수사정보 수집 기능과 검증·평가 기능이 분리될 것이라고 하나, 이 또한 신설될 ‘정보관리담당관실’에서 모두 담당하게 되고, 그와 같이 조직적 분리가 없는 한 ‘칸막이’가 어떻게 씌워질는지 의문이 남는다.
- 수사정보의 검증·평가를 할 별도의 회의가 어떻게 구성될지도 알 수 없고, 검찰 내부의 기구이기 때문에 그 독립성이 담보될 수 없다.

○ 과거로 회귀할 위험성

- 과거에도 범정, 수정관실로 명칭만 바꾸었을 뿐 수사기관인 검찰이 정보 기능을 광범위하게 가짐으로써 생기는 폐해는 늘 지적되어 왔다.
- 정부는 ‘정보관리담당관’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‘6대 범죄’와 관련된 제한적 범위에서만 수사정보 수집·관리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사실상 수정관실 해체라고 밝혔으나, 눈 가리고 아웅에 그칠 수 있다.
- (정부 기조나 사회 분위기에 따라) 얼마든지 검찰이 광범위한 정보수집·활용을 했던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이 남아있기 때문이다.

○ 검찰 내부 회의체의 불투명성

- 앞서 언급했듯이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칸막이 역할을 할 별도의 회의가 어떻게 구성될지 알 수 없고, 폐쇄적으로 운영될 위험 요소가 있다.
- 언론 보도에 의하면 “법무부가 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선임하는 안을 배제한다”고 하는데, 그 이유로 검찰 내 반발기류를 의식하고 수사정보 유출 가능성을 내세우고 있다.
- 그러나 ‘외부자’의 감시 없는 검찰 내부의 회의체가 얼마나 건강할까? 기존에 많은 검찰 내부 회의체가 보여주었듯이 검찰총장에 의해 편의적으로 운영되고, 절차적 공정성을 가장한 심의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.
- 따라서 검찰 외부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

향성이 바람직하다(비밀유지의무를 강하게 부과하면 될 것이다).

4. 대안의 모색

○ 수사기관의 수사정보 수집·활용의 원칙

- 검찰·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에서는 정보가 필요한 분야별로 정보를 다루면 충분하고, 이것이 정보경찰 폐지의 원칙이기도 하다.
- 그 원칙을 구체화하면 ① 범죄 수사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으로 엄격히 제한하고, ②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나 기관만 수사정보를 수집·분석하며, ③ 수사정보의 수집·분석과 검증·평가 기능 사이에 분리와 견제가 되어야 하고, ④ 검·경 수사권조정이 진행되어 검찰의 수사기능이 축소되면 그에 맞추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수사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.

○ 대검찰청의 역할 정립

- 대검찰청은 지금보다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일선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, 이로써 비대한 검찰의 업무중복을 해소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.
- 대검찰청은 실제 수사업무를 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, 마찬가지로 수사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.
- 이번 개편안에 따르더라도 대검찰청에 수사정보 수집과 검증·평가 기능까지 집중되는 것은 우려되는 바가 크다. 전국 검찰조직의 정보를 수집·분석함으로써 검찰 내부의 동향을 파악하고, 대검찰청이 조직 전체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는 데 악용될 여지도 충분하다.
- 결국 대검찰청이 수사정보 수집을 담당해서는 안 될 것이며, 최종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대검의 부서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.

○ 감찰 기능 강화

- 이번 개편안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범죄수사와 상관 없는 정보(예컨대, 관사사찰) 수집이 생길 수 있으므로,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.
- 현재로서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인적 규모나 업무 내용을 임의로 확대할 경우 다른 기관이나 외부에서 인지할 방법이 없어 민주적 통제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.
- 검찰의 셀프 감찰, 법무부의 2차 감찰에 그치지 않고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고, 더 나아가 수사기관에 대한 독립적인 감찰기구를 만드는 것이 숙제이다.

○ 결어

- (박범계 장관이 2021. 10. 5. 국정감사에서 말한) “직접 수사와 관련해 대검이 어떤 범위와 절차 내에서 협력해 정보를 다뤄야 하는지를 포함한 합리적 대안”이 마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.
- 차기 정부가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기본 원칙을 세우고, ‘국민의 신뢰’를 얻을 수 있게 치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.